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발기인(창립)총회**

- 일시 : 2012년 1월 19일(목) 16:00
- 장소 : 아산의제 21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목 차

발기인(창립)총회 계획	1
설립 추진 경과보고	3
설립취지문	5
정 관	7
2012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영 계획서	21
법인설립 관련 서식	38
발기인 연락처	51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발기인(창립)총회 계획

## 1. 창립총회 개요

- 충남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사회경제 대표 및 관계자들이 모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을 기념하고, 사회경제 통합법인의 VISION을 공유 하고자 함.
- 나아가 사회경제를 조직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론화를 촉진하여 변화의 원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년 1월 19일(목), 10:00
- 장소 : 아산의제21 (온양온천역)

## 3. 일정(안)

- 사회자 : (사)씨즈 최선희 지부장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좌석배치 및 안내	STAFF
10:00~10:20	개회선언	사회자
10:20~10:30	법인 설립추진 경과보고	사회자
10:30~10:45	발기인 소개 및 발기인 대표 추인	사회자
10:45~10:50	발기인 대표 인사말	발기인대표
10:50~11:00	설립 취지문 낭독	발기인대표
11:00~11:40	창립총회 안건처리 - 정관(안) 승인 - 이사장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심의 등	임시의장
11:40~11:45	이사장 인사말	이사장
11:45~11:50	VISION 선포식	이사장
11:50~11:55	기념촬영	다같이
11:55~12:00	폐회사 및 공지사항	사회자
12:00~13:00	오찬	다같이

4. 참석자 : 총 22명

\*가나다 순

순	성명	소속	비고
1	강윤정	천안KYC	
2	김동수	사회적기업-(주)깨끗한사람들	
3	김동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4	김민숙	(사)씨즈	
5	김영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사회적기업-(주)두레마을	
6	김영숙	천안생활협동조합	
7	김오열	홍성YMCA	
8	김지훈	아산시민연대	
9	노병갑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10	문덕암	사회적기업-(주)밥상	
11	박기남	아산의제	
12	박상우	마을활력소	
13	박양순	사회적기업-(주)에덴영농	
14	박진용	아산YMCA	
15	박찬무	사회적기업-(주)즐거운밥상	
16	윤성웅	충남연기지역자활센터	
17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18	이용재	호서대학교	
19	이재국	얼굴있는먹거리	
20	전성환	천안YMCA	
21	조성희	사회적기업-(사)충남교육연구소	
22	최선희	(사)씨즈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설립 추진 경과보고

## ○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국 경제는 동반하락의 운명을 피해갈수 없다.

선진국 경제와 신흥 시장국 경제가 한배를 같이 탄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은 2008년 위기가 던져준 교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경제는 실물영역에서는 중국, 금융영역에서는 미국에 매달려 경제성장을 지탱해왔다. 즉 대외의존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회경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 즉, 충남 안에 사회경제 조직들간의 연대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며, 사회경제 조직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초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여 멘토 또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체계가 필요하다.

조직간 연대와 협력, 사회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지역 지자체와 기업·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경제 조직들이 제도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에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중간지원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별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설립,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직간 협력이 필요함에도 전달체계의 분화로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협력 저해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원기관 통합운영으로 지역사회내 다양한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협력적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여 대안으로 권역별 지원기관 통합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 추진경과

일시	장소	참석자(인원)	논의내용
2012.1.10. 화요일	충남 발전연구원 회의실 (공주)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제선(풀뿌리 사람들) 이용재(호서대산학협력단) 김영도(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박찬무(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최민(충남사회경제네트웍) 최선희(씨즈) 김민숙(씨즈) 서정민(지역재단)	<p>1. 주 논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지역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지원 관련 통합 지원조직은 민간이 주도하여 컨소시엄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li> <li>- 충남도의 경우 인증사회적기업을 지원했던 호서대 산학협력단, 지역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원했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컨소시엄에는 참가가 가능하지만 노동부와의 주계약자로서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음.</li> <li>- 제 단위들이 결합하여 민간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이 주계약자 하고자 함.</li> <li>- 노동부 공고 전에 법인화를 추진하고 호서대 이용재교수,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박찬무이사, 씨즈 최선희 지부장, 마을활력소 박상우처장 등이 법인설립 주체로 나서며, 2012년 1월13일 16시에 호서대에서 모여 준비서류를 검토한 후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신청을 하고자 함.</li> </ul>
2012.1.13 금요일 16시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복지교육관 307호	전성환(천안YMCA사무총장) 이용재(호서대교수), 김영도(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 박상우(충남사회경제네트웍) 최선희(씨즈충남지부장) 박찬무(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이사) *배 석 김민숙(씨즈) 김정민(협의회)	<p>1. 조직형태 : 충청남도, 사단법인</p> <p>2. 법인명 : (가칭)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웍</p> <p>3. 주소소재지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393번지</p> <p>4. 발인인대회 일정 : 2012. 1. 19(목), 10시/아산의제21</p> <p>5. 발인인 추천 : 회의참석자가 추천함.</p> <p>6. 주 논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혁신성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음.</li> <li>- 그러나 지금은 법인 설립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니 법인 설립 후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외연을 넓히고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갖고자 함.</li> </ul>

# 설 립 취 지 문

## 1. 법인설립취지

2007년 말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세계경제를 건잡을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하에 ‘경제공동체’로 묶여 있는 세계 다른 나라들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경, 식품, 에너지 등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시장경제만으로는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전 세계의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재건과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현 우리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다른 방식의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인식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맞물리면서 과도한 기대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역에 사는 당사자들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역 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동시에 강력한 대안일 것이다. 이에 충남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간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출범하여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소비가 이뤄져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 위기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이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체계 안에서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내야한다. 우리는 일자리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안정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매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충남지역의 경제안정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온정성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와 협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과의 협력에 노력을 통해 일정 정도의 보호된 시장 및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스템을 확립하여 각 조직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와 협력,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지역지자체와 기업·지역민의 애정과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을 살리는 환경, 교육, 농업, 사회서비스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내에서 창

출하고 소비하는 지역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 정부나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경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조직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론화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주체로 역할을 부여하고 변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갈 것이다.

2012년 1월 19일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설립발기인 일동

### 2. 사업내용

○ 목표 : 사회적경제 구축 및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1) 소셜비즈니스 단체 및 기업 발굴 및 육성
- 2) 민·관, 민·민을 연계하는 중간지원 활동
- 3)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활동
- 4) 부처간 혼재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의 통합·조정 활동
- 5) 청년들의 소셜벤처 도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6)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재구성
- 7)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정책 건의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정 관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영문약자 “CNSE”)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내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발굴, 지정·인증 지원 등 내발적 발전에 의한 지역 복지 향상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5. 청년 일자리창출 및 창업 지원사업
6. 일자리창출 및 지역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7.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8. 지역과 마을 자원을 동원하고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9.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컨설팅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함에 부수되거나 긴밀히 연관되는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 사업 및 필요한 추진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목적사업을 당연 수반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수

익사업을 새로이 영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회나 출연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 [이익 공여 무상 원칙 등] ① 이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그 밖에 사회적 친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은 개인과 단체 가입이 가능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시설 및 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징계]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정권, 견책으로 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1명 이상 3명 이하
2. 이사 : 5명 이상
3. 감사 : 2명

제13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이 법인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이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공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된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또는 공석이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안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담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는 자동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임원의 성실 의무]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3항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20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공동)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2조 [후원회장] 이 법인의 재정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회장은 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제 4 장 총 회

제23조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회원들로 구성한다.

제24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사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 담보, 증여, 대여, 매도, 기채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분사무소의 창설 및 승인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과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7조 [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 [지위와 구성] ①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② 이사회는 (공동)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단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 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예산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후원회장 임명
8.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업무 추진을 위한 각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
11. 각 분사무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 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 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장 운영협의회와 사무국

제35조 [운영협회의 설치]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협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36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업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 및 기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 7 장 재산과 회계

- 제3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 재산의 증강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

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⑥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예산 및 결산 보고] ①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매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잉여금의 처분] 법인의 이 회계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8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제4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안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없이 법인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견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및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혹은 사회적기업에 귀속시킨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0조 [정치중립의무] 이 법인은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51조 [인터넷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치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분사무소의 규정 승인] 각 필요한 지역의 분사무소의 규정은 법인 정관에 준하여 제정하되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위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발기인들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함.

2012년 1월 19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발기인대표 : 전 성 환 (인감)

발기인 : 강 윤 정 (인감)

발기인 : 김 동 수 (인감)

발기인 : 김 동 준 (인감)

발기인 : 김 민 숙 (인감)

발기인 : 김 영 도 (인감)

발기인 : 김 영 숙 (인감)

발기인 : 김 오 열 (인감)

발기인 : 김 지 훈 (인감)

발기인 : 노 병 갑 (인감)

발기인 : 문 덕 암 (인감)

발기인 : 박 기 남 (인감)

발기인 : 박 상 우 (인감)

발기인 : 박 양 순 (인감)

발기인 : 박진용 (인감)

발기인 : 박찬무 (인감)

발기인 : 윤성웅 (인감)

발기인 : 이상선 (인감)

발기인 : 이용재 (인감)

발기인 : 이재국 (인감)

발기인 : 조성희 (인감)

발기인 : 최선희 (인감)

<별지1>

기본 재산 목록

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고

<붙임1>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사장	2012.1.9. ~2014.12.31			
이사	2012.1.9. ~2014.12.31			
이사	2012.1.9. ~2014.12.31			
이사	2012.1.9. ~2014.12.31			
이사	2012.1.9. ~2014.12.31			
이사	2012.1.9. ~2014.12.31			
감사	2012.1.9. ~2014.12.31			
감사	2012.1.9. ~2014.12.31			

<붙임2>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인

2) 이사장의 인

3) 계인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2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영 계획서**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2012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영 계획서

### I. 사업의 목적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조직간, 지역간 자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민 참여 확대와 민·관, 민·민의 협력 강화를 도모 함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균형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민이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 현장중심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 충남지역의 NGO, 복지기관, 청년, 일반시민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 욕구를 파악하여 인증에 필요한 법적 요건, 경영 요건,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II. 사업의 기본방향

-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구축
- 교육, 컨설팅 등 통합지원 체계 마련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역할을 부여하고 변화의 원동력을 마련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식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 정보의 창출, 공유, 확산을 위한 문화조성 - 네트워크 구축
- 핵심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적 목표 설계 지원 및 연계



### Ⅲ. 조직 및 사업의 체계도

구분	직위	주요역할	
		대외적	내부적
	이사장	전략적 리더 1	
	이사	전략적 리더 2	
	감사		사업 및 회계감사
팀원	사부처장	전략적 리더 3	총괄 기획
	컨설턴트1		사회적기업컨설팅 1:1 멘토지원 지원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컨설턴트2		마을기업 1:1 멘토지원 지원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행정총부 및 인증담당		기업 발굴 및 인증지원 행정회계 총괄
	네트워크 및 지역자원연계담당		조직, 업종별 네트워크 자원발굴 및 연계
	교육지원 및 마케팅 담당		조직강화 및 특화교육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교육지원 및 마케팅 담당		조직강화 및 특화교육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IV. 2012년 주요 추진사업

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인증지원 및 신규발굴  
- 추진기간 : 2012. 3 ~ 2012. 12
  
2.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 추진기간 : 2012. 3 ~ 2012. 12
  
3.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추진기간 : 2012. 3 ~ 2012. 12
  
4.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  
- 추진기간 : 2012. 3 ~ 2012. 12
  
5. 기업 리더 및 종사자 교육지원  
- 추진기간 : 2012. 3 ~ 2012. 12
  
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추진기간 : 2012. 3 ~ 2012. 12
  
7. 충청남도 시책사업
  - 1)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추진기간 : 2012. 3 ~ 2012. 12
  
  - 2)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 추진기간 : 2012. 3 ~ 2012. 5

## V. 세부사업계획서

### 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인증지원 및 신규발굴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체계 마련</li> <li>○ 예비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 도모</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및 인증 설명회,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전환, 정관구비 등 인증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li> <li>- 인증심사를 위한 인증요건 충족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li> </ul> </li> <li>○ 찾아가는 인증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에 의한 인증 컨설팅 제공, 인증률 제고를 위해 인증가능성이 높은 곳 선택적 집중 컨설팅 제공</li> </ul> </li> <li>○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모델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모델 개발 워크숍 : 지역의 특성과 업종별, 정부 각부처의 일자리연계사업 등 다각적인 모형에 따른 신규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 실시</li> <li>- 지역내 신규모델 가능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멘토링 실시</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li> <li>○ 인증준비 단계부터 지원활동을 통해 인증률을 높일 수 있다.</li> </ul>	
소요예산	총 소요비용 : 일금사백만원(₩4,000,000)	
	항목	예산액 (단위:원)
	합계	4,000,000
	인증 설명회 및 간담회	2,000,000
	찾아가는 인증 컨설팅	1,000,000
신규 사업 모델 개발 워크숍	1,000,000	자료집, 다과비, 진행비, 컨설팅강사료 등 총 4회 × 500,000원
		컨설턴트 현장방문소요비용(여비) 월2회 × 10개월 × 50,000원
		자료집, 다과비, 진행비등 총2회 × 500,000원

## 2.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채널 확보</li> <li>○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속하게 피드백 수렴</li> <li>○ 사회적경제 현장의 Needs 확인</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흐름 : 심사계획수립→심사수행→심사결과에 따른 모니터링</li> <li>○ 모니터링 계획 :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간담회→모니터링→결과보고서→결과에 대한 공유</li> </ul> </li> <li>○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과워 형성 및 결속력 유지</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li> <li>○ 정부재정지원사업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li> <li>○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li> </ul>		
소요예산	총 소요비용 : 일금오백이십만원 (₩5,200,000)		
	항목	예산액 (단위:원)	산출근거
	합계	5,200,000	
	모니터링	3,200,000	현장방문소요비용(여비) 년2회×16개시·군×100,000원 *노동부인증기업17개(2012.1.17.기준)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67개(2012.1.17.기준) *'12 지정예상기업30개
결과보고 자료집제작	2,000,000	2회(상·하반기)×200부×5,000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분야별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공적 사업 확산 및 사업방향을 설정</li> <li>○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 성장을 통해 사업 안정화 및 공익활동을 확대</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협약체결 및 일상적 경영자문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 회계/ 인사,노무/ 법무/ 경영전반 등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과 협약체결→온라인 및 유선등 상시 자문 상담 지원</li> </ul> </li> <li>○ 사회적경제 조직 맞춤형 경영컨설팅 통합관리체계 구축</li> <li>○ 경영 컨설팅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li> </ul> </li> <li>○ 사회적경제 조직 관리 및 지역자원지원현황 통합관리 DB 구축</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Needs 도출→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지원을 통한 경영컨설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li> <li>○ 경영,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복지 등 상담전문영역의 확대와 온라인, 현장 모니터 등 상담의 다양화를 통한 상시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li> <li>○ DB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을 위한 유효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li> </ul>		
소요예산	총 소요비용 : 일금이백삼십만원 (₩2,300,000)		
	항목	예산액 (단위:원)	산출근거
	합계	2,300,000	
	경영자문위원회 구축비용	500,000	경영컨설팅 전문가or기관과 협약식 협약식1회×500,000원(다과비,진행비등)
	경영 컨설팅 모니터링	800,000	현장방문소요비용(여비) 년1회×16개시·군×50,000원
결과보고 자료집제작	1,000,000	1회(하반기)×200부×5,000원	

#### 4.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상호 협력 및 활성화 방안 모색</li> <li>○ 지역민과 사회적경제 단체들간 교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li> <li>○ 사회적경제 디자이너 배출로 재생산 구조 구축</li> <li>○ 사회적경제실무협의체 확립</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업종별 (제조8/택배2/로컬푸드11/교육5/영농29/돌봄7/건설5/문화예술8/세탁2/청소3/재활용및환경5),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li> <li>○ 사회적경제 활성화 민간 네트워크 조직</li> <li>○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벤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스티벌, 지역활동가 자원봉사대회 등</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 공유의 확산과 조직들간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Vision 제시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li> <li>○ 충남지역 내발적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체계 및 지역 자본의 선순환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목적 이행 및 지속가능 경영을 확대할 수 있다.</li> <li>○ 조직간, 지역간의 내부거래를 활성화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li> <li>○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인지도를 확산할 수 있다.</li> <li>○ 사회적 경제 조직들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li> </ul>		
소요예산	총 소요비용 : 일금팔백만원 (₩8,000,000)		
	항목	예산액 (단위:원)	산출근거
	합계	8,000,000	
	업종별네트워크	2,800,000	정기네트워크 년4회-7개업종 (제조8/로컬푸드및영농40/교육5/돌봄7/건설5/문화예술8/청소,재활용,환경8) 4회 × 7개업종 × 100,000원
	지역별네트워크	2,400,000	정기네트워크 년4회-16개시·군 3개 권역활동 4회 × 3개권역 × 200,000원
	민간네트워크	800,000	정기네트워크 년4회 × 200,000원
네트워크 이벤트	2,000,000	페스티벌, 자원봉사대회 등 각 100만원	

5. 기업 리더 및 종사자 교육지원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 리더, 종사자의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인식</li> <li>○ 조직의 Vision, 전략의 이해와 Mission 설정으로 의식함양</li> <li>○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쉽 행동 체득</li> <li>○ 상호간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li> <li>○ 가치있는 아이디어 도출 및 활용</li> <li>○ 사회적경제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대안을 창출</li> <li>○ 조직의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업무지식의 습득</li> <li>○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활성화를 꾀하고 전략적 파트너쉽을 가지고 학습조직을 구축</li> <li>○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적인 지혜와 진취적 의지를 가지고 변화시대의 관리능력과 리더쉽을 갖춘 관리자를 육성하고,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전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권역, 년1회</li> <li>- 역사와 개념, 뿌리찾기, 충남사회적경제분석, 자원개발, 과제와 역할, 사례, 사회적경제와 복지 파트너쉽</li> </ul> </li> <li>○ 전략적 리더쉽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권역, 년1회</li> <li>- 전략경영, 의사결정관리, 조직변화관리 및 실천계획 수입, 프로세스 혁신</li> </ul> </li> <li>○ 종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권역, 년 1회</li> <li>- 업종별 (제조8/택배2/로컬푸드11/교육5/영농29/돌봄7/건설5/문화예술8/세탁2/청소3/재활용및환경5) 중 대표 5개 업종 년 1회</li> <li>- 업무특성별 맞춤 교육(회계, 마케팅, 세무 등), 기업경영의 이해, 인간관계의 이해, 의사소통 스킬개발, 강점과 갈등관리, 아이디어 다듬기 및 활용, 프리젠테이션 스킬, 시간관리 전략</li> </ul> </li> <li>○ Vision 워크샵</li> <li>○ 업종별 교육 매뉴얼 제작 → ISO인증 추진</li> </ul>

구분	사업실행계획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과 종사자간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형태로 수립 할 수 있다.</li> <li>○ 기업 파트너와 지역민(고객)의 차이를 이해하고, 장래의 경영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 경쟁 우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핵 전략을 책정 할 수 있다.</li> <li>○ 조직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공감에 바탕을 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한다.</li> <li>○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 자세로 주인의식을 갖는다.</li> <li>○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한다.</li> <li>○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철학을 제시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통일 수 있다.</li> <li>○ 각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역할과 지역화 전략 수립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li> </ul>
------	--

총 소요비용 : 일금사천일백구십만원 (₩41,900,000)																			
소요예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산액 (단위: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산출근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1,900,000</td> <td>           &lt;공통경비내역&gt;            -강사료 (1시간당 100,000원)            -사무경비(1회 70,000원)            -교재비(1회25부×3,000원=75,000원)            -장소임대료(1회 200,000원)            -다과비(1회 50,000원)            -진행비(1회 250,000원)            -예비비(1회 100,000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경제 전반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8,100,000</td> <td>3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20시간)2,7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략적 리더쉽 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6,900,000</td> <td>3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16시간)2,3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자 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21,900,000</td> <td>           *일반교육(4개 권역-년1회)            4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24시간)3,100천원=12,400천원            *업종별교육(5개업종-년1회)            5개업종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12시간)1,900천원=9,500천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종별 교육 매뉴얼 제작</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0</td> <td>ISO인증 추진</td> </tr> </tbody> </table>	항목	예산액 (단위:원)	산출근거	합계	41,900,000	<공통경비내역> -강사료 (1시간당 100,000원) -사무경비(1회 70,000원) -교재비(1회25부×3,000원=75,000원) -장소임대료(1회 200,000원) -다과비(1회 50,000원) -진행비(1회 250,000원) -예비비(1회 100,000원)	사회적경제 전반교육	8,100,000	3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20시간)2,700,000원	전략적 리더쉽 교육	6,900,000	3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16시간)2,300,000원	종사자 교육	21,900,000	*일반교육(4개 권역-년1회) 4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24시간)3,100천원=12,400천원 *업종별교육(5개업종-년1회) 5개업종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12시간)1,900천원=9,500천원	업종별 교육 매뉴얼 제작	5,000,000	ISO인증 추진
항목	예산액 (단위:원)	산출근거																	
합계	41,900,000	<공통경비내역> -강사료 (1시간당 100,000원) -사무경비(1회 70,000원) -교재비(1회25부×3,000원=75,000원) -장소임대료(1회 200,000원) -다과비(1회 50,000원) -진행비(1회 250,000원) -예비비(1회 100,000원)																	
사회적경제 전반교육	8,100,000	3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20시간)2,700,000원																	
전략적 리더쉽 교육	6,900,000	3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16시간)2,300,000원																	
종사자 교육	21,900,000	*일반교육(4개 권역-년1회) 4개 권역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24시간)3,100천원=12,400천원 *업종별교육(5개업종-년1회) 5개업종 × 년1회 × 교육비및강사료 (12시간)1,900천원=9,500천원																	
업종별 교육 매뉴얼 제작	5,000,000	ISO인증 추진																	



6.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고객에게 정보를 줌으로서 고객확보 및 수익 극대화</li> <li>○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지도 확산</li> <li>○ 지역민과 사회취경제 조직간 서로의 가치공유</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를 통한 활용</li> <li>○ 소식지 및 자료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년 6회 제작, 1회 300부</li> </ul> </li> <li>○ 웹기반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또는 카페제작 활성화</li> <li>- 블로그, 카페, 관련 웹사이트 연동시스템 구축</li> </ul> </li> <li>○ 사회적경제 조직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사업 모델 발굴</li> <li>-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우수사례발굴 → 언론을 통한 홍보</li> </ul> </li> <li>○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민간의 간담회 개최</li> <li>○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품과 서비스 박람회 개최</li> <li>○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협약체결 행사</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기업브랜드 이미지 확산 기대할 수 있다.</li> <li>○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li> <li>○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 상호간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다.</li> <li>○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다.</li> </ul>	
소요예산	총 소요비용 : 일금일천사백구십만원 (₩14,900,000)	
	항목	예산액 (단위:원)
	합계	14,900,000
	자료집제작	9,700,000
	지역 간담회 지원비	3,200,000
서비스 박람회	2,000,000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식지 발간 6회×300부×4,000원=7,200,000원</li> <li>*사례집 발간 500부×5,000원=2,500,000원</li> <li>16개시·군×200,000원</li> <li>부스설치 및 홍보비 등 2백만원</li> </ul>

## 7. 충청남도 시책사업

### 1) 사회적경제 리더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지역리더 발굴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li> <li>○ 지역문제를 지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역량 강화</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12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MBA 및 컨설턴트 아카데미 운영-대학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li> <li>- 육성인원 : 15명</li> <li>- 커리큘럼 : 경영에센스, 마케팅에센스, 회계에센스, 전략에센스, 비즈니스에센스 등</li> </ul> </li> <li>○ 지역 밀착형 경영컨설턴트 육성교육</li> <li>○ 지자체 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 : 1박2일 워크숍 형태 진행</li> <li>○ 권역별 전문강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화폐 관련 강좌, 농촌형 공동체 창업강좌, 사회적경제 이해와 실천강좌, 협동조합을 통한 살리좋은 마을 만들기 등</li> </ul> </li> <li>○ 지역 청년 아카데미</li> <li>○ 핵심역량 인재육성교육 : 주1회 6개월 과정/1박2일 워크숍</li> <li>○ 취약계층 희망인문학 강좌 : 16개시·군 지역별 년4회(2시간씩)</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대상별 특성을 살림 실행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li> <li>○ 지역별 사회적경제 컨설턴트의 발굴, 훈련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컨설팅 지원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비즈니스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할 수 있다.</li> <li>○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시군공무원, 언론, 기업,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등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지원을 위한 자발적 참여 분위 조성된다.</li> <li>○ Action Learning 방식의 학습모형 보급을 통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할 수 있다.</li> </ul> </li> </ul>

구분	사업실행계획		
소요예산	총 소요비용 : 일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		
	항목	예산액 (단위:원)	산출근거
	합계	120,000,000	
	실무지원비	12,000,000	10개월 × 1,000,000원
	사회적경제 MBA 및 컨설턴트 아카데미 운영	27,540,000	15명 × 1,836,000원
	전문강좌 및 일반강좌 개설 (권역별, 업종별)	20,500,000	*권역별 전문강좌 3개 권역 × 1,500천원 = 4,500천원 *시군별 일반강좌 16개시·군 × 1,000천원 = 16,000천원
	지역 청년 아카데미	9,000,000	*지역 대학과 결합운영 3회 × 3,000,000원
	핵심역량 인재육성교육	27,000,000	*주1회 6개월 과정교육 24회 × 1,000,000원 = 24,000,000원 *1박2일 워크샵 숙박비, 자료집, 다과비, 진행비, 강 사료, 식대비 등 300만원
	취약계층 희망인문학 강좌	16,960,000	*강사료(1시간 150천원) × 2시간 × 16개 시·군 × 2회 = 9,600천원 *사무경비(1회30천원) × 16개시·군 × 2회 = 960천원 *장소임대료(1회100천원) × 16개시·군 × 2회 = 3,200천원 *다과비(1회50천원) × 16개시·군 × 2 회 = 1,600천원 *진행비(1회50천원) × 16개시·군 × 2 회 = 1,600천원
공무원 교육	7,000,000	*1박2일 워크샵 *숙박비, 자료집, 다과비, 진행비, 강 사료, 식대비 등 700만원	

2)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구분	사업실행계획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의 장기적인 평가와 전망을 제시</li> <li>○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활동과 Vision 공유</li> <li>○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정체성을 점검하고 공동의 해결과제를 찾아 발전방향을 모색</li> <li>○ 사회적경제 지역별, 단체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li> </ul>		
추진기간	2012. 3 ~ 2012. 5(2박 3일)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회의</li> <li>○ 영역별 발전 과제 세미나</li> <li>○ 네트워크 워크숍</li> <li>○ 선진 기업 탐방</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 상호활동의 이해를 도모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li> <li>○ 사회적경제 인식공유와 공동의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li> <li>○ 활동가 대회를 계기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다.</li> </ul>		
소요예산	총 소요비용 : 일금오천만원 (₩50,000,000)		
	항목	예산액 (단위:원)	산출근거
	합계	50,000,000	
	실무지원비	3,000,000	3개월 × 1,000,000원
	대회장임대	3,000,000	3일 × 1,000,000원
	숙박 및 식대료	28,500,000	6식 × 300명 × 10,000원 = 18,000천원 2박 × 75실(4인기준) × 70천원 = 10,500천원
	자료집 제작	2,450,000	350권 × 7,000원
	프로그램소요비용	8,000,000	학술회의, 세미나, 네트워크 워크숍, 선진기업탐방등 8,000,000원
	사무행정경비	1,000,000	사무행정경비 등
	행사진행비	1,000,000	다과비, 잡비등
평가회	2,600,000	평가회 500,000원 평가자료집300부 × 7천원 = 2,100천원	
예비비	1,450,000	예비비	

## VI. 예산 운영 계획서

### 1. 세입예산서

(단위:천원)

관	항	목	예산액	세부내역
	총계		430,000	
	소계		425,000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230,000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위탁사업비(2011년 기준) 130,000천원 마을기업지원기관 위탁사업비(2011년 기준) 100,000천원
사업수입	수익사업수입	수익사업수입	175,000	<충남도 위탁사업> 사회적경제 리더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 120,000천원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50,000천원 <기타사업수입> 5,000천원
회비수입	회비수입	회비수입	10,000	1,000천원 × 10개월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5,000	후원금
전입금	소계		5,000	
	전입금	법인전입금	5,000	출자금
잡수입	소계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2. 세출예산서

(단위:천 원)

관	항	목	예산액	세부내역
		총계	430,000	
		계	179,381	
		소계	160,881	
사무비	인건비	급여	110,000	사무처장 1명 × 2,000,000원 × 10개월 = 20,000천원 사업팀장 6명 × 1,500,000원 × 10개월 = 90,000천원
		상여금	3,150	명절상여 및 휴가상여 3회 × 150,000원 × 7명
		제수당	5,000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등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179	134,150,000원(급여, 상여금, 후생경비 합산) × 1/12
		사회보험부담금	10,552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113,150,000원 × 7.5% = 8,486,250원 고용/산재보험 134,150,000원 × 1.54% = 2,065,910원
		기타후생경비	21,000	교통비보조비 200,000원 × 7명 × 10개월 = 14,000원 식대보조비 100,000원 × 7명 × 10개월 = 7,000원
		소계	3,00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1,500	임대료 50,000원 × 10개월 = 500,000원 업무협의등 소요되는 제경비 100,000원 × 10개월 = 1,000,000원
		회의비	1,500	이사회, 운영위 등 각종 회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50,000원 × 10개월
	운영비	소계	15,500	
		여비	7,000	사업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사업계획1~7번) 700,000원 × 10개월
		수용비 및 수수료	3,000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홍보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소규모수선비 등 300,000원 × 10개월
		공공요금	2,000	우편료·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200,000원 × 10개월
		제세공과금	1,500	법인세, 자동차세,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비	2,000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200,000원 × 10개월

관	항	목	예산액	세부내역
재 산 조 성 비		계	6,500	
		소계	6,500	
	시설비	자산취득비	6,000	비품구입비 - 컴퓨터, 책상, 의자, 서랍장, 복사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500	공구·기구·비품수선비,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사 업 비		계	241,300	
		소계	71,300	
	사업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인증지원 및 신규발굴	3,000	인증 설명회 및 간담회(자료집, 다과비, 진행비, 컨설팅강사료) 2,000천원 신규 사업모델개발워크숍(자료집, 다과비, 진행비등) 1,000천원
		정부재정지원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2,000	결과보고 자료집 제작비 2회(상·하반기) × 200부 × 5,000원
		사회적경제 조직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1,500	경영컨설팅 전문가or기관과 협약식 500천원 결과보고 자료집 제작비 1회(하반기) × 200부 × 5,000원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8,000	업종별네트워크 4회 × 7개업종 × 100,000원 = 2,800천원 지역별네트워크 4회 × 3개권역 × 200,000원 = 2,400천원 민간네트워크 1년4회 × 200,000원 = 800천원 네트워크 이벤트 사업비 2,000천원
		기업 리더 및 종사자 교육지원	41,900	사회적경제전반교육 8,100천원 / 전략적리더쉽교육 6,900천원 종사자교육 21,900천원 / 매뉴얼 제작 5,000천원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4,900	소식지 및 사례집발간 9,700천원 지역 간담회 지원비 3,200천원 서비스 박람회 2,000천원
		소계	170,000	
	수 입 사 업 비	사회적경제 리더 발굴 및 아카데미 운영	120,000	충남도 위탁사업비 120,000천원 - 사회적경제MBA 및 컨설턴트 아카데미 운영, 전문강좌 및 일발강좌개설, 지역청년 아카데미, 핵심역량 인재육성교육, 취약계층 희망인문학강좌, 공무원 교육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50,000	충남도 위탁사업비 50,000천원 - 2박3일 활동가 대회 행사 진행비	
예 비 비		계	2,819	
	예비비	소계	2,819	
		예비비	2,819	예비비-예측 불가능한 지출, 예산의 초과지출 충당비용 등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명 칭	<b>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b>		
	⑥소재지		⑦전 화 번 호	
	⑧대표자 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⑪전 화 번 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설 립 발 기 인 명 단 1

연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기명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설 립 발 기 인 명 단 2

연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기명날인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재 산 목 록

총 계						
1. 기본 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건 물				
		대 지				
		출연금				
		소 계				
2. 보통 재산	품 목		대수	종류	금 액	비 고
	소 계					

---

# 기 본 재 산 기 증 승 낙 서

## 1. 재산의 표시

연번	종 류	규 모(㎡)	가액(원)	연간수입액(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고
1	토지						
2	건물						
3	예금						
4	유가증권						
5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12. . .

(위 재산 소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평가서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 1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귀중**

---

# 보통 재산 기증 승낙서

## 1. 재산의 표시

연번	종류	단위	가액	수량	비고
1					
2					

2. 위 재산은 아래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12. 1. .

(위 재산 소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첨부)

1. 인감증명서 1통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귀중**

---

# 특 수 관 계 부 존 재 각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법인 임원간에 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여하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 합니다.

2012년 1월 일

(인감)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귀중**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직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인

---

##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임원(□이사장/□이사/□감사)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2년   1월   일

(인감)

(첨부)

1. 인감증명서 각 1부
2. 임원이력서 각 1통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귀중**

---